

##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4년 10월13일

발 의 자 : 강우신의원과 6인

### 제안이유

- 의원의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은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 
따를 수 없는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정비하고 자함

### 주요내용

-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본 조례  
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준용규정으로 삭제

### 참고사항

-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“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및 ” 을 삭제하고 “ 여비의 ” 를 “ 여비 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<u>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</u></p>	<p>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<u>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</u></p>